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**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**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 또한, **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후** 당사 견본주택으로 **사본(동호수 기입 필수)을 제출**하시기 바랍니다. (제출방법 : 팩스, 우편, 서면 가능)

인지세 납부액

구분	기재금액	세액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등)	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2만원
	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	4만원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7만원
	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15만원
	10억원 초과	35만원

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(관련 법령 「인지세법」 제1조,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)
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 납부기한	분양권 전매계약서 납부기한
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	계약체결일(계약일 이전 발급필요)	명의변경 승인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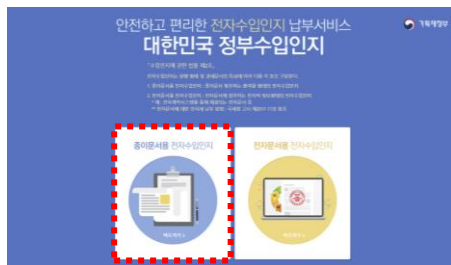
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개정사항 (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) / 무납부(또는 과소납부) 및 분실 시 적용

- ※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납부(또는 과소납부) 세액의 100%
- ※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납부(또는 과소납부) 세액의 200%
- ※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: 무납부(또는 과소납부) 세액의 300%

온라인 구매방법 안내(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 미방문시)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- 전자수입인지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 「전자수입인지」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4 구매 - 납부정보입력

- ① 용도 : 인지세 납부
- ② 과세문서 종류 : 1.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
- ③ 금액 : 150,000원
- ④ 건수 : 1건
- ⑤ 확인 및 결제



3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로그인 후 구매



5 출력

- ❖ 전자수입인지는 **1회에 한하여 출력**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, 테스트출력 요망)



!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을 방문하시면 더욱 간편합니다.

팩스 : 051-201-4855 / 주소 :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3598-1번지